

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(변경)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

의안번호 25 - 139

제출년월일 : 2025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건 명

-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(변경)

2. 제안 이유

-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(변경)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제2항에 따라 마포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.

3.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(변경)에 관한 사항

가. 정비사업 현황

- 위 치 : 마포구 노고산동 31-77번지 일대
- 시행면적 : 3,245.0m²
- 용 도 : 공동주택, 근린생활시설, 업무시설, 청년창업정보교육센터, 외국인 주민센터
- 시 행 자 : 토지등소유자
- 추진경위
 - 2010. 03. 18. :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[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] 수립 고시
(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101호)
 - 2013. 09. 26. : 도시관리계획(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
(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14호)
 - 2014. 08. 28. : 서울특별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[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] 변경(경미한 변경),
신촌지역(마포)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(서울특별시고시
제2014-304호)

- 2019. 09. 05. : 신촌지역(마포)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일몰기한 연장 공람·공고 (마포구공고 제2019-857호) (기정 '14.8.28 ~ '19.8.27 → 변경 '14.8.28 ~ '21.8.27)
- 2019. 10. 17. :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[도시정비]형 재개발사업 부문] 변경 고시 (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43호)
- 2022. 02. 17. : 신촌지역(마포) 제3-3지구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(마포구고시 제2022-28호)
- 2022. 09. 01. : 신촌지역(마포) 제3-3지구 정비계획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(마포구고시 제2022-165호)
- 2024. 08. 29. :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[도시정비]형 재개발사업 부문] 변경 고시 (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423호)
- 2025. 04. 16. : 신촌지역(마포) 3-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신청
- 2025. 05. 22. ~ 07. 25. :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, 주민공람·공고(마포구 공고 제2025-1108호)
- 2025. 08. 18. : 신촌지역(마포) 3-3지구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(시행자 변경) (2022-마포구-도시환경시행인가-1(변경1차))
- 2025. 11. 06. :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[도시정비]형 재개발사업 부문] 변경 고시 (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608호)
- 2025. 11. 06. ~ 12. 05. :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, 주민공람·공고(마포구 공고 제2025-1814호)
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구 분	정비사업 명칭	위 치	면 적(m ²)		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기 정	신촌지역(마포) 3-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	마포구 노고산동 31-77번지 일대	3,245.0	-	3,245.0	-
변 경	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					

다. 정비계획

1) 토지이용계획

구 분	명 칭	면 적(m ²)	비 율	비 고
합 계		3,245.0	100.0	-
정비기반시설	도로	249.1	7.7	-
획 지	획 지	2,995.9	92.3	-

2) 용도지역 결정 조서

구 分	면 적(m ²)	비 율(%)	비 고
합 계	3,245.0	100.0	-
상업지역	일반상업지역	3,245.0	100.0

3)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

가) 도로

구 分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 정	중로	3	6	12	국지 도로	40 (40)	노고산동 31-17	노고산동 31-22	일반도로	-	대현토지구획 정리사업('67.7.8)	-
기 정	소로	1	3	8-10	국지 도로	167 (75)	노고산동 31-76	노고산동 31-23	일반도로	-	대현토지구획 정리사업('67.7.8)	-

※ ()는 지구 내 연장임

4) 건축물 정비·개량 및 건축시설계획

가) 기존 건축물의 정비·개량계획

구분	구 역 구 분		지구 구분		위 치	정 비 개 량 계 획(동)					비 고
	명 칭	면 적 (m ²)	명 칭	면 적 (m ²)		계	존치	개수	철거후 신축	철 거 이 주	
기정	신촌지역 마포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	8,657.8	3-3지구	2,995.9	노고산동 31-77 일대	18	-	-	18	-	
			3지구								

나) 건축시설 등에 관한 계획

구분	구 역 구 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 치	주용도	건폐율 (%)	용적률 (%)	높이(m) 최고층수	비 고
	명칭	면적 (m ²)	명칭	면적 (m ²)						
기정	신촌지역 마포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	8,657.8	3-3지구	2,995.9	노고산동 31-77 일대	주거	60 이하	기준 394 이하 허용 684 이하 상한 806.5 이하	100 이하	
변경			3지구			주거	60 이하	기준 600 이하 허용 678 이하 상한 1,009 이하	160 이하	
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	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거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(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43호) 건립 규모 및 비율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<th>전용면적(m²)</th><th>세대수</th><th>비율(%)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일반분양</td><td>40m² 이하</td><td>15</td><td rowspan="2">82.3</td></tr> <tr> <td>40m² 초과 ~ 60m² 이하</td><td>222</td></tr> <tr> <td rowspan="2">공공임대¹⁾</td><td>40m² 이하</td><td>33</td><td rowspan="2">51</td><td>11.5(64.7)</td><td rowspan="2">17.7 (100.0)</td></tr> <tr> <td>40m² 초과 ~ 60m² 이하</td><td>18</td><td>6.2 (35.3)</td></tr> <tr> <td colspan="2" rowspan="2">합 계</td><td>288</td><td>100.0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전용면적(m ²)	세대수	비율(%)	일반분양	40m ² 이하	15	82.3	40m ² 초과 ~ 60m ² 이하	222	공공임대 ¹⁾	40m ² 이하	33	51	11.5(64.7)	17.7 (100.0)	40m ² 초과 ~ 60m ² 이하	18	6.2 (35.3)	합 계		288	100.0				
구 분	전용면적(m ²)	세대수	비율(%)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분양	40m ² 이하	15	82.3																										
	40m ² 초과 ~ 60m ² 이하	222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공임대 ¹⁾	40m ² 이하	33	51	11.5(64.7)	17.7 (100.0)																								
	40m ² 초과 ~ 60m ² 이하	18		6.2 (35.3)																									
합 계		288	100.0																										
		<p>주1) 공공임대주택 21세대에 해당하는 대지지분(149.8m²) 기부채납</p> <p>※ 기부채납하는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및 대지지분은 건축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(대지 지분 149.8m² 이상 범위 내)</p> <p>※ ()는 공공임대주택 전체 세대수에 대한 비율임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	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거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(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608호, 2025.11.06.) 건립 규모 및 비율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전용면적(m²)</th> <th>세대수</th> <th>비율(%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4">일반분양</td><td>40m² 이하</td><td>32 (증 17)</td><td rowspan="4">95.0</td></tr> <tr> <td>40m² 초과 ~ 60m² 이하</td><td>212 (감 10)</td></tr> <tr> <td>60m² 초과 ~ 85m² 이하</td><td>38 (증 38)</td></tr> <tr> <td>85m² 초과</td><td>1 (증 1)</td></tr> <tr> <td rowspan="2">재개발 의무임대¹⁾</td><td>40m² 이하</td><td>5 (감 28)</td><td rowspan="2">1.7 (34.0)</td></tr> <tr> <td>40m² 초과 ~ 60m² 이하</td><td>10 (감 8)</td></tr> <tr> <td colspan="2" rowspan="2">합 계</td><td>298 (증10)</td><td>100.00</td><td>5.0 (100.0)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전용면적(m ²)	세대수	비율(%)	일반분양	40m ² 이하	32 (증 17)	95.0	40m ² 초과 ~ 60m ² 이하	212 (감 10)	60m ² 초과 ~ 85m ² 이하	38 (증 38)	85m ² 초과	1 (증 1)	재개발 의무임대 ¹⁾	40m ² 이하	5 (감 28)	1.7 (34.0)	40m ² 초과 ~ 60m ² 이하	10 (감 8)	합 계		298 (증10)	100.00	5.0 (100.0)		
구 분	전용면적(m ²)	세대수	비율(%)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분양	40m ² 이하	32 (증 17)	95.0																										
	40m ² 초과 ~ 60m ² 이하	212 (감 10)																											
	60m ² 초과 ~ 85m ² 이하	38 (증 38)																											
	85m ² 초과	1 (증 1)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재개발 의무임대 ¹⁾	40m ² 이하	5 (감 28)	1.7 (34.0)																										
	40m ² 초과 ~ 60m ² 이하	10 (감 8)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합 계		298 (증10)	100.00	5.0 (100.0)																									
		<p>주1)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15세대에 해당하는 대지지분(116.5m²) 기부채납</p> <p>※ 기부채납하는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및 대지지분은 건축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(대지 지분 116.5m² 이상 범위 내)</p> <p>※ ()는 재개발 의무임대주택 전체 세대수에 대한 비율임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

나) 건축시설 등에 관한 계획 (계속)

		① 기준용적률 : 394% ② 공공기여에 따른 허용용적률 완화량 : 290% 적용												
구분	목 표	인센티브 대상	기 준		적용(안)									
기정	의무 친환경개발	녹색건축물 인증	기준등급 준수 시 허용용적률 총량의 1/2부여	최대 100%	100%	290% 적용								
		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												
		신재생에너지이용시설												
	계획 유도 도시경제 활성화	신성장산업육성을 위한 시설	정률방식 (보상계수 0.25)	최대 100%	100%									
		대학생 창업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등												
	생활SOC 문화인프라	생활SOC, 공연장, 박물관, 미술관, 영화상영관 등	정률부여(0.2)	최대 50%	12%									
건축물 용적률 계획	보행가로 활성화	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	정량부여(30%)	최대 50%	50%									
		무장애도시조성												
	안전, 방재	방재관련시설	정량부여(30%)	최대 30%	30%									
③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량 : 122.5% 적용														
공공시설 $\text{산식} = 1.3a \times (\text{기준용적률} + \text{공공기여 인센티브})$ $= 1.3 \times \{(\text{도로 } 249.1\text{m}^2 + \text{공공임대주택 대지지분 } 149.8\text{m}^2) \div (2,995.9\text{m}^2 - 149.8\text{m}^2) \} \times (394\% + 290\%)$ $= 1.3 \times 0.14015 \times 684\% = 124.62\%$														
※ ① + ② + ③ = 806.5% 이하 적용														
변경	① 기준용적률 : 600% ②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완화량 : 78% 적용													
	친환경 개발	신재생에너지 의무화보기준 초과설치	정량부여(20%)	최대 20%	20%	78% 적용								
		전기차충전소 설치	정량부여(20%)	최대 20%	20%									
	보행가로 활성화	가로지장물 이전/지중화	정률부여(3.0)	최대 100%	18%									
	안전·방재	방재 관련시설	정량부여(20%)	최대 20%	20%									

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중 가로지장물(지상 전주 5본)의 지중화 환산부지면적 산식		
구분	내용	비고
⑨ 전력설비 지중화작업 환산부지면적	개략공사비(원)	664,016,000 KEPCO 마포용산지사(664,016,000원), 부가세 별도
	공시지가(원)	15,944,240 대상지 평균공시지가(일반상업지역)
	부지가액(원)	31,888,480 공시지가 2배
	환산부지면적(m^2)	20.0000 개략공사비 ÷ 부지가액
⑩ 통신설비 지중화작업 환산부지면적	개략공사비(원)	333,952,090 KT 용산지점(333,952,000원), 부가세 별도
	공시지가(원)	15,944,240 대상지 평균공시지가(일반상업지역)
	부지가액(원)	31,888,480 공시지가 2배
	환산부지면적(m^2)	10.0000 개략공사비 ÷ 부지가액
가로지장물	지중화 총 환산부지면적 (m^2)	30.0000 ⑨ + ⑩
2030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(변경) [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] (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608호, 2025.11.06.)	18.02%	도입시설면적은 공사구간 면적 기준. 단, 지상 전주·전선의 이전/지중화시에는 시설 공사비 환산면적 기준으로 적용 ※정률방식인센티브량 = 기준용적률 × (도입시설면적 ÷ 대지면적) × 보상계수 : 3.0 = 600.00% × (30.0 m^2 ÷ 2,995.9 m^2) × 3.0 = 18.02% ≒ 18.00%
허용용적률인센티브_서울도심도심부 외		

* 부지가액은 사업시행계획인가시 감정평가금액으로 하고, 공사비도 변경될 수 있음
③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량 : 236.08% 적용

건축물 용적률 계획	변경	<p>산식 = 허용용적률 × (1.3 × 가중치 × α토지 + 1.2 × α건축물)</p> <p>공공시설 = 678.00% × [(1.3 × 가중치 1.0 × α토지 0.187175) + (1.2 × α건축물 0.088535)] = 914.08%(완화량 236.08%)</p>
------------------	----	--

1)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: 236.08
- 기반시설(도로) 제공 면적 : 249.1 m^2
- 건축물 토지지분면적 : 262.5 m^2
-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: 242.0 m^2

1-1) 가중치 산정
- 가중치 :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'공공시설 등 제공부지'의 용적률 비율
= 1

1-2) α 산정

① α 토지 : 공공시설 등 부지(토지)제공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(토지) 제공면적 비율
= (249.1 m^2 + 146.0 m^2 + 116.5 m^2) ÷ (3,245.0 m^2 - 249.1 m^2 - 146.0 m^2 - 116.5 m^2)
= 511.6 m^2 ÷ 2,733.4 m^2
= 0.187175

② α 건축물 : 공공시설 등 부지(토지) 제공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(건축물)
설치 비용 및 현금 환산부지) 제공 면적 비율
= 242.0 m^2 ÷ (3,245.0 m^2 - 249.1 m^2 - 146.0 m^2 - 116.5 m^2)
= 242.0 m^2 ÷ 2,733.4 m^2
= 0.088535

④ 친환경 초과등급 인증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량 : 94.92% 적용
제로에너지 건축물 초과등급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
= 허용용적률 × (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11% + 녹색건축 우수 3%)
= 678.00% × (0.11 + 0.03) = 94.92%
→ 친환경 인센티브 = 94.92%
※ ①+②+③+④ = 1,009.0% 이하 적용

주거비율 완화에 관한 계획	변경	• 공공주택 공급계획		
		구분	일반상업지역	비고
		① 재개발 의무 임대	$288\text{세대} \times 5\% = 14.4\text{세대}$ $\Rightarrow \text{계획 } 16\text{세대}$	
		② 주거 비율 완화 임대	용적률 $[(\text{허용용적률} - \{(\text{허용용적률} \times \text{비주거비율}) / (\text{계획용적률})\} + 400\%) \div 2]$ $= [684\% - \{(684\% \times 0.1623) + 400\%\}] \div 2 = 86.5\%$ 이상 $\Rightarrow \text{계획 } 105.28\%$	
		연면적	확보 기준 용적률 \times 확지면적 $= 86.5\% \times 2,995.9\text{m}^2$ $= \text{지상 연면적 } 2,591.5\text{m}^2 \text{ 이상}$ $\Rightarrow \text{계획 } 3,154.12\text{m}^2$	①, ② 종복 인정 가능
		세대수	확보계획 지상연면적(공급면적) \div 임대주택공급면적(전용36A형, 전용49B형) $= \text{전용 } 36\text{A형}(1,834.78\text{m}^2 \div 36.20\text{m}^2) + \text{전용}$ $49\text{B형}(1,319.34\text{m}^2 \div 48.06\text{m}^2)$ $= \text{전용 } 36\text{A형}(33\text{세대}) + \text{전용 } 49\text{B형}(18\text{세대})$ $\Rightarrow 51\text{세대}$	
		③ 총 공공주택 세대수	① 정비사업 의무 임대 15세대 < ② 주거비율 완화 임대 51세대 (큰 값 적용 \Rightarrow 총 51세대)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거비율 : 85.88%(전체연면적기준), 89.98%(전체용적률 기준) * 주거용 용적률 400% \rightarrow 745.34%(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16조 별표2 라목1호에 따라 완화) 				
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계획	변경	• 공공주택 공급계획		
		구분	일반상업지역	비고
		① 재개발 의무 임대	$= 298\text{세대} \times 5\% = 14.9\text{세대}$ $\Rightarrow \text{계획 } 15\text{세대}$	
		② 주거비율 완화임대	2030 도시·주거환경기본계획(변경)에 따라 주거용적률 제한 삭제	
		③ 총 공공주택 세대수	① 정비사업 의무 임대 15세대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거비율 : 88.4%(전체연면적기준), 87.1%(전체용적률 기준) * 주거용 용적률 400% \rightarrow 859.84% (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16조 별표2 라목1호에 따라 완화) 		
		기정	최고높이 100.0m	
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	변경	높이 : 기준높이 130m + ① + ② = 160.19 ≤ 160m(소수점아래 절삭)		
		구분	내용	적용계획
		① 기준높이		130m
		② 공공용지 제공에 따른 완화높이	$= \text{기준높이} \times (\text{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:당초의 대지면적}) \text{ 이내}$ $= 130.00\text{m} \times (249.1\text{m}^2 + 242.0\text{m}^2 + 146.0\text{m}^2 + 116.5\text{m}^2) \div 3,245.0\text{m}^2$ $= 130.00\text{m} \times (753.6\text{m}^2 \div 3,245.0\text{m}^2)$ $= 30.19\text{m}$	30.19m
		합계		
				160.19m
		기정	• 건축지정선 : 백벌로변 3m • 건축한계선 : 이면부 2m • 고층부(4층 이상) 벽면한계선 : 백벌로변 6m	
대지내 공지계획 (공개공지)	변경	• 건축한계선 : 백벌로변 3m, 이면부 2m • 고층부(4층 이상) 벽면한계선 : 백벌로변 6m		
		기정	획지별 지정된 위치를 준수하여 확보기준면적 이상을 설치	
기타에 관한 사항	기정	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설치구간: 백벌로 변		

○ 기반시설 제공계획

구분	시행지구 면적 (m ²)	대지 면적 (m ²)	정비 기반시설 면적 (m ²)	계획기반 시설내 기존 공공용지 (m ²)	대지내 폐지 국공유지	기반시설 순부담 면적 (m ²)	순부담률(%)			비고
							정비기반 시설 등 (토지) 부담률	건축물 기부채납 부담률	합계	
기정	3,245	2,995.9	249.1	—	—	149.8	398.9		12.3	구역내 평균부담률 8.5%이상
변경	3,245	2,995.9	249.1	—	—	504.5	511.6	242	23.2	

※ 순부담률 산출 : 순부담면적 ÷ (시행지구 면적 - 계획기반시설내 기존공공용지 면적 - 대지내 폐지되는 국공유지 면적)

5)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및 시행계획

시행방법	시행예정시기	사업시행예정자	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	비고
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	정비구역 (변경)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	토지등소유자	현황 : 29세대, 계획 : 298세대 증) 269세대	-

4. 상정사유

- 신촌지역(마포) 3-3지구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101호(2010.3.18.)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(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) 수립(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)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304(2014.8.28.)호로 정비구역 지정된 지역으로,
- 노후·불량된 건축물이 밀집(총 18개동 중 16개동 노후·불량, 약 89%)되어있는 지역이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608호로 변경된 「2030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(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)」에 따라 재개발 의무임대 주택을 포함한 도심 내 주택공급확대를 위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.
- 구의회 의견청취 후 관련절차를 이행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결정할 예정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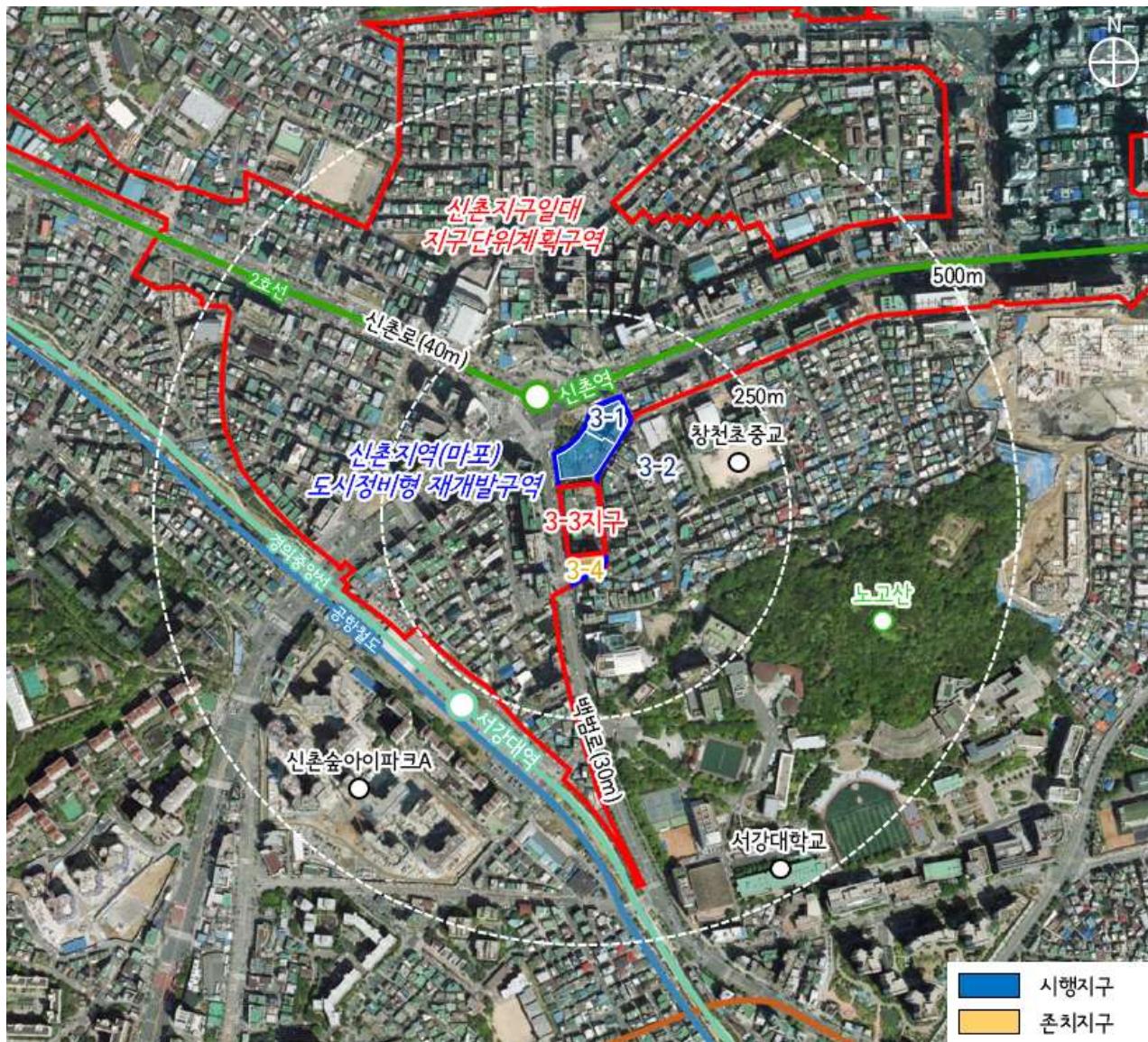
5. 주민공람 실시

- 공람기간 : 2025. 06. 26. ~ 2025. 07. 25. - 주민의견 : 없음
2025. 11. 06. ~ 2025. 12. 05.

6. 주민설명회 개최

- 개최예정

■ 사업대상지 위치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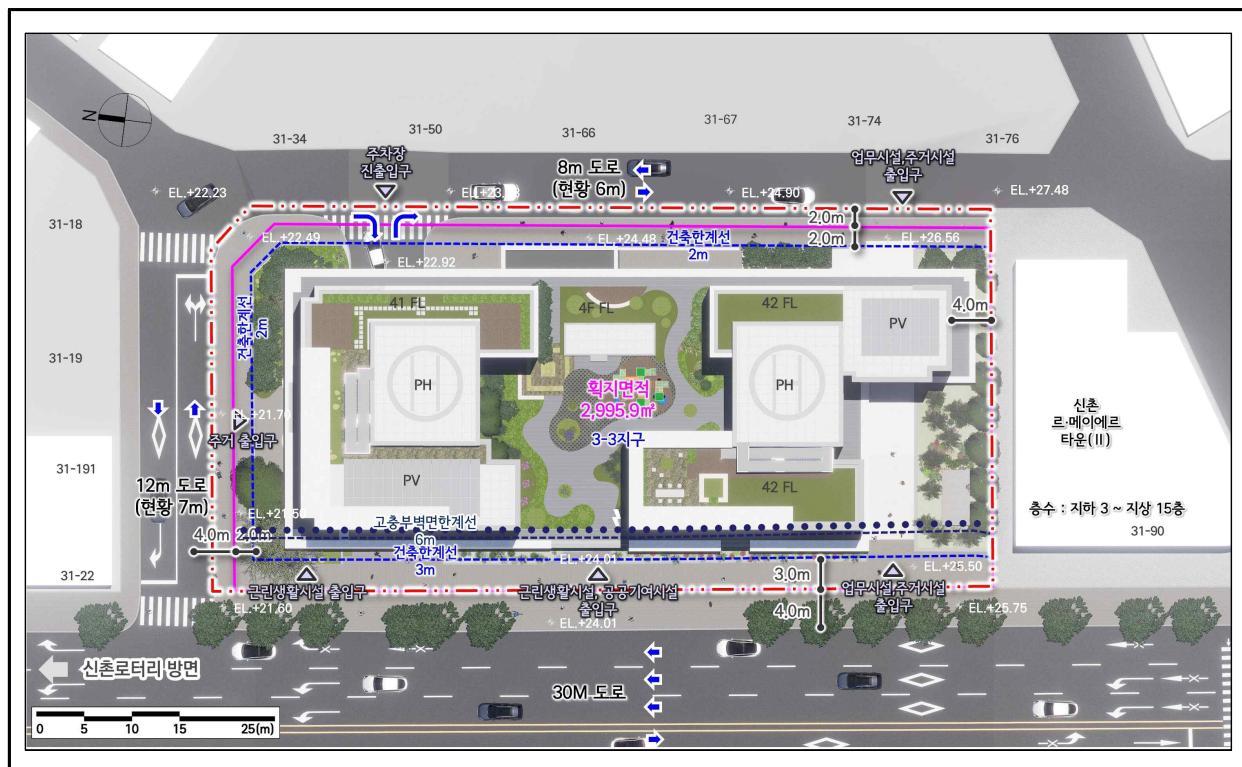


■ 신촌지역(마포) 3-3지구 건축계획(안)

구 분	내 용	비 고
구역면적	3,245.0m ²	도로 : 400.9m ²
대지면적	2,995.9m ²	
용 도	공동주택, 균린생활시설, 업무시설, 청년창업정보교육센터, 외국인 주민센터	
건축면적	1,795.7m ²	
건 폐 율	59.94%	법정 : 60% 이하
연면적	계	43,475.56m ²
	지상총	29,591.39m ²
	지하총	13,884.17m ²
용 적 률	987.73%	법정 : 1,009% 이하
규 모	지하 6층 / 지상 42층(146.97m)	법정 : 160m 이하
조경면적	449.39m ² (대지면적의 15.0%)	법정 : 15% 이상
주차대수	321대	법정 : 189.54대
세대수	계	298세대
	39.65m ²	37세대
	59.89m ²	37세대
	59.93m ²	74세대
	59.99m ²	74세대
	59.86m ²	37세대
	84.83m ²	38세대
	133.98m ²	1세대

재개발이무임대주택
15세대 포함

○ 배치도



○ 투시도



※ 투시도는 예시안으로서, 향후 절차이행 과정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.